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4. 8. 6.>

위생용품의 종류(제2조제2항 관련)

1. 일회용 팬티라이너(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)
2.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